적전초병특수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폭행)·적전초병특수협박(인정 된죄명:초병특수협박)·적전초병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폭행)

[대법원 2016. 10. 13. 2016도11317]



【판시사항】

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(적극)

【참조조문】

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,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, 제54조, 제56조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상 고 인】검사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

【원심판결】서울고법 2016. 6. 30. 선고 2016노1055 판결

【주문】

1

워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.

【이유】

- 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-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,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, 제58조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.
-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,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, 적전초병특수협박,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이 사건에 대하여는,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,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, 군형법 제54조, 제56조에 따라 군 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,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.
-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,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기택(재판장) 김용덕 김신(주심) 김소영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